



공정거래위원회

달라진 공정거래제도

- 2020년 1/4분기 -

2020. 4.

공정거래위원회

목 차

I. 공정거래법(카르텔)	1
① 상습 입찰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	
②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담합 기준 명확화	
II. 하도급법	3
③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대상 확대	
④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확대	
⑤ 대금체불 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한	
III. 가맹사업법·대리점법	6
⑥ 서울시·인천시·경기도·부산시도 분쟁조정 실시	
⑦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 기준 마련	
⑧ 허위·과장 정보로 인한 가맹점 창업피해 예방	
IV. 대규모유통업법	9
⑨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'판촉비 떠넘기기' 감시 강화	

I

공정거래법[카르텔]

상습 입찰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

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(☎ 044-200-4534)

**상습적으로 입찰 담합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
입찰참가자격제한이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.**

■ [주요내용] 5년간 입찰담합으로 누계별점*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합니다.

* 입찰담합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유형에 따라 별점이 부과됨.
(경고 0.5점, 시정권고 1.0점, 시정명령 2.0점, 과징금 2.5점, 고발 3.0점)

○ 종전에는 5년간 입찰담합으로 별점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한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였습니다.

■ [기대효과]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좀 더 효과적으로 예방 억지되고,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가 변화될 것입니다.

■ [시행시기] 2020. 1. 1.부터

▣ 관련규정 |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(개정)

4.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(2)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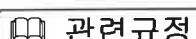
- *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별점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함
- * 과거 5년간의 기간산정: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위원회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5년으로 역산하되 초일을 산입

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담합 기준 명확화

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(☎ 044-200-4534)

**소상공인(가맹점 · 대리점) 단체가
유력사업자(가맹본부 · 공급업자)와 거래조건을 협의하는
경우는 담합(카르텔)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**

- [주요내용] 원·부재료 가격, 영업시간, 판매장려금,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의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는 담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 - 다만,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,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결정하는 행위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.
- [기대효과] 가맹점과 대리점 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해 해당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, 앞으로 가맹점과 대리점의 거래조건이 합리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- [시행시기] 2020. 3. 31.부터



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(제정)

☞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 > 공정위 뉴스 > 보도 > ‘소상공인’으로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.

II

하도급법

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대상 확대

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(☎ 044-200-458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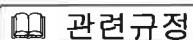
대기업 및 모든 중견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■ [개정내용]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.

- 종전에는 원사업자(발주자)가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천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가능했습니다.

■ [기대효과] 중견기업의 86.5%를 차지하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하도급업체들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.

■ [시행시기] 2020년 하반기(예상)



하도급법 시행령(입법예고)

제9조의2(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) ③ 법 제16조의2(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) 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”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「독점구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
2.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
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확대

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(☎ 044-200-4584)

**연간 매출액 30억 원 미만(제조 · 수리위탁),
시공능력평가액 45억 원 미만(건설위탁) 중소기업은
하도급법 적용을 면제 받게 되었습니다.**

- [개정내용]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·수리 위탁은 연매출액 30억 원 미만, 건설 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원 미만으로 상향·확대하였습니다.
 - 종전에는 연매출액(제조·수리) 20억 원 미만, 시공능력평가액(건설) 3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만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었습니다.
- [기대효과] 하도급법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그동안 물가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,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.
- [시행시기] 2020년 하반기(예상)

▣ 관련규정 하도급법 시행령(입법예고)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 등)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"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제조위탁·수리위탁의 경우: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
2. 건설위탁의 경우: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
3. 용역위탁의 경우: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

대금 체불 업체에 대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한

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(☎ 044-200-4584)

**하도급 업체가 임금, 자재 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
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.**

■ [주요내용] 원사업자가 체불 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 중지를 요청한 경우, 발주자는 지급을 중단하여야 합니다.

○ 종전에는 원사업자가 체불 업체에 대한 직불 중지를 발주자에게 요청하더라도 중지 여부에 대해서 발주자가 결정하였습니다.

☞ **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:** 발주자는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·파산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, ②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·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,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및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등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·수리·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.

■ [기대효과] 하도급 대금을 직불받는 하도급 업체가 임금, 자재 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도록 하여, 하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근로자, 영세 자재업자의 이익까지 균형 있게 보호 될 수 있을 것입니다.

■ [시행시기] 2019. 11. 1.부터

관련규정 **하도급법(개정)**

- 제14조(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)③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, 자재대금 등의 지급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,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III

가맹사업법 · 대리점법

서울시·인천시·경기도·부산시에서도 분쟁조정 실시

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(☎ 044-200-4938), 대리점거래과(☎ 044-200-4960)

가맹 · 대리점 분쟁이 발생한 경우

서울시·인천시·경기도·부산시에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■ [주요내용] 서울시·인천시·경기도·부산시에 가맹 · 대리점 사업 관련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,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도 수행합니다.

- 종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·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사업 정보 공개서 등록 및 가맹·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전담했었습니다.

- ☞ 서울시 연락처 : 공정거래분쟁조정팀(02-2133-5389)
- ☞ 인천시 연락처 : 소상공인정책과(032-440-4210)
- ☞ 경기도 연락처 : 공정거래지원센터(031-8008-5555)
- ☞ 부산시 연락처 : 소상공인지원담당관(051-888-4772)

■ [기대효과]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, 부산시 지역의 가맹점, 대리점들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- 각 지역 소재 점주들은 본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와 지자체 협의회 중 원하는 곳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■ [시행 시기] 2019. 1. 1.부터(부산시는 2020. 4월 예정)

10년 이상 장기 점포의 계약 갱신 기준 마련

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(☎ 044-200-4934)

**10년 이상 가맹점들의 안정적인 계약 갱신을 위해
「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하였습니다.**

■ [주요내용]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은 가맹점(장기점포)들의 계약 갱신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.

☞ 「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」 주요내용

- ① 영업 방침 미준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맹본부의 계약 갱신 거절 가능
- ② 가맹본부는 사전에 공개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계약 갱신 여부 결정
- ③ 평가결과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 부여

- 종전에는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,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 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.

■ [기대효과] 장기 점포 운영자들의 계약 갱신과 관련한 분쟁 소지가 줄어들고, 많은 가맹점들이 안정적인 계약기간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■ [시행시기] 2019. 5. 28.부터

☞ 관련규정 |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(제정)

☞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 > 공정위 뉴스 > 보도 > 「장기점포」로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.

허위·과장 정보로 인한 가맹점 창업 피해 예방

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(☎ 044-200-4937)

가맹분야의 허위·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였습니다.

- [주요내용] 가맹사업법으로 금지되는 허위·과장행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여 가맹 창업 희망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.

☞ 허위·과장 정보제공 행위(4가지)

- ① 회사 연혁, 사업실적, 가맹점 현황, 임직원 현황, 재무현황,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 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
- ② 상품, 용역, 설비, 원·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
- ③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
- ④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

☞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(5가지)

- ①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·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
- ② 상품, 용역, 설비, 원·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·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
- ③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·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
- ④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·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
- ⑤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·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

- [기대효과] 예비 가맹점주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창업투자 결정을 하고, 창업과 관련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감소하기를 기대합니다.

- [시행시기] 2019. 11. 20.부터

| [관련규정] **가맹사업거래 상 허위·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(제정)**

IV

대규모유통업법

**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
'판촉비 떠넘기기' 감시 강화**

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(☎ 044-200-4950)

**대형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할 때
준수해야 하는 비용분담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.**

■ [주요내용]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판촉행사가 ①사전 약정에 근거가 없거나, ② 납품업체의 비용 분담비율이 50%를 초과하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.

* 소매업종 연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 합계가 3천㎡ 이상인 사업자는 “대규모유통업자”에 해당됨

☞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

- 쇼핑몰 사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해야 한다.
- 약정 후에는 약정서면, 행사실시 관련 서류를 기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속 보관해야 한다.
- 납품업체 분담 비율의 50%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i)전체 판촉비용과 ii)납품업체 부담액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.

■ [기대효과]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 비용 분담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■ [시행시기] 2020. 1. 1.부터

☞ 관련규정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

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연락처

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-0007

서울지방사무소 경쟁과 02-2110-6159
건설 하도급과 02-2110-6151
제조 하도급과 02-2110-6125

부산지방사무소 경쟁과 051-460-1023
하도급과 051-460-1045

대전지방사무소 경쟁과 042-481-8011
하도급과 042-481-8018

광주지방사무소 경쟁과 062-975-6821
하도급과 062-975-6845

대구지방사무소 (대표) 053-230-6300